

1 개정개요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철도공단 부동산 및 철도 차량 지방세 감면 <input type="radio"/> 철도시설용 부동산 : 취득세 25% <input type="radio"/>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 부동산 : <u>취득세·재산세 (도시지역분 포함) 100%</u> ※ 최소납부세제 배제 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율 축소 및 연장 <input type="radio"/> (현행과 같음) <input type="radio"/>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 부동산 : <u>취득세·재산세 100%(반대급부 無), 50%(반대급부 有)</u> ※ 최소납부세제 배제 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 |

□ 개정내용

- 교통 인프라 개선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율 3년 연장하되,
 - 지방세 특례 원칙에 따라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은 정비 세목간 정합성(§73의2),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* 등을 고려하여 반대 급부 유·무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
 - ※ 농어촌공사(§13③), LH(§76②), 수자원공사(§77②), 지방공기업(§85의2①④)
 -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 등 자산과 그와 관련된 부채는 사업이 끝나는 때 국가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나(「국가철도공단법」 §24조)
 - 공단이 국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않고 공단이 선로사용료를 받아 회수
 - ※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발행(공단) → 고속철도 건설(국비30% 공단70%) → 국가 귀속 → 고속철도순이익(선로사용료-유지보수비-이자비용)으로 건설비 회수
 (공단 부채가 회수될때까지 장기간 철도시설관리권 설정)
 - ⇒ 공단이 고속철도시설자산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§26에 따라 취득한 고속철도시설관리권은 반대급부에 해당
 - ※ 일반철도(국비100%) 및 광역철도(국비70%, 지방30%)에 공단의 목적사업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갱신되어 설정되는 철도시설관리권의 경우는 반대급부 미해당